



제 417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95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	3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기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기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며,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후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재 농업·농촌 분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¹⁾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실태조사(2017~, 연간 약 12.9억원) 및 5년 단위 영향·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산업·어촌 분야는 법적근거 없이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자체예산(시험연구사업)을 통해 수산분야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2015~, 연간 6억원)하고 있음.

□ 개정안은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 및 수온 양극화로 인한 해양에서의 극한 현상 출현 빈도 증가 등에 따라 수산분야의 경제적 손실이 유발되는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은 2015년 「농어업·농어촌

-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²⁾하였으나, 이 법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하, ‘현행법’이라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각각 분법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이를 고려할 때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입법례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의 규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³⁾.

□ 다만,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후영향평가’로 약칭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인 바, ‘기후영향평가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유사입법례의 구체적 조문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문 의 처
02)6788-54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영향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